

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

신청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
통지내용	당초 납부기한	
	납부기한 연장결과	년 월 일까지(일)
	연장 허용/ 불허용 사유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[]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[]불허용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지방(유역)환경청장

